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 길 영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 길 영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상위법인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에 근거하여 혼용되고 있는 ‘조명환경관리구역’과 ‘조명환경 관리지역’을 ‘조명환경 관리구역’으로 통일하였습니다. 또한 운영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운영주체를 ‘관리청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